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14 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송옥주·윤종군·이병진

박 정・이수진・한정애

홍기원 • 민병덕 • 한민수

황명선 • 추미애 • 김준혁

박해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그 실적을 해당 기관의 평가 에 반영하는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 상 구내식당을 대기업 계열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 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 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 신

설).

법률 제 호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 선정 및 지원)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구매 우 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②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의 선정방법·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의2(지역농산물 구매 우수
	민간기업 선정 및 지원) ① 농
	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
	물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
	<u>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</u>
	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
	책을 마련할 수 있다.
	②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
	기업의 선정방법・절차 및 지
	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
	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